편저자 : 송 광 호

※ 정오 및 오탈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42에 있는 표 내용 중 **직원 – (1)**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직원	(1) 경호실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둠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 p.42~43에 있는 표 내용 중 **직원 – 승진소요최저연수 – (1)**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직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경호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간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경호공무원	㉠ 3급 – 2년 이상 ㉡ 4급 – 4년 이상 ㉢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기능직공무원	삭제

▶ p.46에 있는 표 내용 중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p.49에 있는 표 내용 중 **청원경찰법**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이란 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③ 그 밖에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함)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 p.49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법**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업법	(1)~(3)은 그대로 유지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다음 ①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24시간* (×)}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② 및 ③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2항}.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24시간* (×)}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함.

②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③ 특수경비원 →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5)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1항}.

① 영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③ 주택재개발 · 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④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건물 ·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 운영권 · 관리권 ·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5)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2항}.

(7)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 등)}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의 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배치허가 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서 또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또는 배치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배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경비업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③ 경비업자는 배치허가를 받아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관할 경찰관서장은 (4) ①, ②, ③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① 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경비원 중 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경비업자가 배치허가신청을 한 경비원 중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총합이 배치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의2(배치 불허가 처분의 요건)}.

③ 법 제24조(감독)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 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3항}.

(9) (4) ①, ②, ③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4항}.

(10)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 · 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5항}.

(11) 경비원의 근무상황 기록부 : 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장소별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폐지일시 및 해당 경비원의 휴무 · 근무여부를 표기한 일자별 근무상황을 포함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함)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영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3항에 의한 출장소를 말하며, 해당 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함. 이 경우 근무상황기록부의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경비원의 근무상황 기록부)}.

(12) 경비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됨{『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6항}.

①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제264조(상습범),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체포 · 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폭행 등, 집단적 폭행 등)

(13)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1)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7항}.

(14)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8항}.

① (4) ①, ②, ③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 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② (1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③ (13)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4) ①, ②, ③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④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⑤ 경비업자가 (4) ①, ②, ③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 p.52에 있는 표 내용 중 **명령규칙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구성**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명령 규칙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

▶ p.52~54에 있는 표 내용 중 **명령규칙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책임**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명령 규칙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책임**	(1)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 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함. (2) 분장책임 ①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함. ②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국가정보원 1국장, 8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위해요인의 제거 ㉢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③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사증발급지원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④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 · 보고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⑤ 국방부 조사본부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 · 처리 · 분석 및 대책의 수립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문화 · 체육 · 관광 시설 등에서의 경호와 관련된 협조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⑧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⑩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 휴대품 · 소포 · 화물에 대한 검색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⑪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⑫ 경찰청 보안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정보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입국체류자 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 행사장 · 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 · 검색
㉦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 · 운영
㉨ 총포 · 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해상에서의 경호 · 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⑭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⑮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 · 해 · 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⑯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군부대 동향 파악
㉥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취약지에 대한 검문 · 검색
㉧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⑰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 · 검색
㉢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 · 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 p.100~101에 있는 표 내용 중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 연혁 – 1930년, 2003년**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비밀경호국 (Secret Service)	연혁	1930년	백악관경찰대를 비밀경호국 부문에 편입함.
		…	…
		2003년	2003년 1월자로 비밀경호국의 소속이 기존의 재무성에서 국토안보부로 변경됨.

▶ p.101에 있는 표 내용 중 **임무 및 권한 – 경호임무(Protection) – 대통령 및 요인 경호(Special Agent)**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임무 및 권한	경호임무 (Protection)	대통령 및 요인 경호 (Special Agent)	**(1)~(4)는 그대로 유지** (5)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재혼 및 사망시까지) 및 그 자녀(16세에 달할 때까지) **(6)~(10)은 그대로 유지**

▶ p.103에 있는 표 내용 중 **외교보안국(DS) – 주요임무**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외교보안국 (DS)	주요임무	(1)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경호 **(2)~(4)는 그대로 유지**

▶ p.107~108에 있는 표 내용 중 **경호의 주체 – 경호요원 – 결격사유**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호의 주체	경호요원	결격사유	**(1)은 그대로 유지** (2) 사경호원 임용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① 만 18세 미만인 자{↔ 만 60세 이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 활동)의 죄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 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예비, 음모)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미수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부터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⑦ 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p.110에 있는 표 내용 중 **대통령경호실 – 법적근거**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대통령경호실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p.110에 있는 표 내용 중 **대통령경호실 – 경호대상 – (6)**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대통령경호실	경호대상	(6)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 외 요인(要人) → 경호등급 ① 실장은 (5) 및 (6)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② ①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③ ①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따로 정함.

▶ p.117에 있는 표 내용 중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p.118에 있는 표 내용 중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구성**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대통령경호 안전대책 위원회	구성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 : 경호실장 (3) 부위원장 : 경호실 차장 (4)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p.119에 있는 표 내용 중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 국가정보원 8국장**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국가정보원 테러정보 통합센터장	(1)~(5)는 그대로 유지

▶ p.119에 있는 표 내용 중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4)는 내용 그대로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1)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2)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3)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4)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5)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4)는 내용 그대로 유지

▶ p.120에 있는 표 내용 중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1)~(3)은 그대로 유지

▶ p.123에 있는 표 내용 중 **민간경호원 – 결격사유**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민간경호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음{『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 만 18세 미만인 자{↔ 만 60세 이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 활동)의 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강,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예비, 음모)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미수범) ③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④ ①부터 ③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p.123에 있는 표 내용 중 **민간경호원 – 장구사용권한 – 기본장구**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민간경호원	장구사용 권한	기본장구	(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 단봉 · 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1항}. (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2항}. (3)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3항}.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4항}. (5)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5항}. (6) 경비원 휴대장비의 종류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장비 등)}.

장비	비고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분사기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안전모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 이하의 방패로 경찰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기타 필요장비	무전기, 방검복 등 기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 ·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비

→ 규제의 재검토 :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p.125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지도사**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음{『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 만 18세 미만인 자{↔ 만 60세 이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 활동)의 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강,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예비, 음모)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미수범) ③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④ ①부터 ③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	(1)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2항}. ① 경비원의 지도 · 감독 ·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2항} 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2항} ③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④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 감독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의 직무를 말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항}. →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2항}.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함) ⓑ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함) (2)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1)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3항}. (3)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3항}. (4)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6항}. →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 ·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① 경비원의 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제지 ② 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③ 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④ 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치된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 p.125에 있는 표 내용 중 **청원경찰 – 정의 – (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청원경찰	정의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p.128에 있는 표 내용 중 **경호대상자의 지침 – (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호대상자의 지침	(3) 면담이나 상대방과의 업무처리는 반드시 신원이 확인된 사람, 공인된 장소, 정해진 시각에 가족이나 경호원이 참석하거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하도록 함.

▶ p.140에 있는 표 내용 중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 (4) – ①**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4) 관련법령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p.142에 있는 표 내용 중 **경호정보작용 – 의의 – (4)**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호정보작용	의의	(4) 경호정보작용은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기본정보, 기획정보, 분석정보, 판단정보, 예고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함.

▶ p.154에 있는 표 내용 중 **선발경호작용 – 선발경호의 특성**의 **괄호 속 출처**를 **이두성**에서 **이두석**으로 교체해주세요.

▶ p.159~160에 있는 표 내용 중 **실시요령 – (21)**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실시요령 (참고:이상철, 경호현장운용론)	(21) 욕실내부의 비상태, 거울 뒷면내부, 화장품, 수건 등을 점검하고 냉 · 온수상태 등 세심하게 검측함.

▶ p.175에 있는 표 내용 중 **5인 대형 – (9)**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5인 대형	5인 대형 그림 생략	(9) 후방경호원 : 경호대상자의 후미와 전방, 측방경호원들의 이동 중 경계근무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점에 대한 공간을 고개만 돌리면서 180° 범위를 경계하면서 이동함.

▶ p.184에 있는 표 내용 중 **방법 – 터널 통과시 – (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방법 (이상철, 「경호현장운용론」)	터널 통과시	(3) 선도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야 함. ← 앞지르기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 p.218에 있는 표 내용 중 **복제 – 민간경호원**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복제	민간경호원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1)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경찰청장은 (1)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3)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경비업자는 (5)에 따른 신고서 또는 (6)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8)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p.367에 있는 **30번 문제**의 **1번 문항**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①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p.369에 있는 **35번 문제**의 **해설**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해설 ④ (틀림) 경호정보작용은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p.436에 있는 **16번 문제**의 **1번 문항**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① 휴대용 가스분사기 사용상 유효사거리 2~3m이다.

▶ p.474에 있는 **7번 문제**의 **해설** 중 **정리박스** 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정리

(지면상 수정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교재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구성	(1)~(3)는 그대로 유지 (4)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 (5)는 그대로 유지

▶ p.475에 있는 표 내용 중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 국가정보원 8국장**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국가정보원 대테러정보통합센터장	(1)~(5)는 그대로 유지

▶ p.476에 있는 표 내용 중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4)는 내용 그대로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1)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2)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3)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4)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5)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4)는 내용 그대로 유지

▶ p.477에 있는 표 내용 중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1)~(3)은 그대로 유지

▶ p.525~527에 있는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1. 대통령경호실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사증발급지원
   다.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 · 보고
   다.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5.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다.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 · 처리 · 분석 및 대책의 수립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문화 · 체육 · 관광 시설 등에서의 경호와 관련된 협조
   다.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7.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 · 소포 · 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보안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마. 행사장 · 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 · 검색
사.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 · 운영
자. 총포 · 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 · 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 · 해 · 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1.18.〉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 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 · 검색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 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 · 검색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 · 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 · 외 경호행사의 지원

▶ p.538~539에 있는 **16번 문제**의 **4번 해설**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해설

① 해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④ (틀림) **경호계획수립 활동**은 **경호작용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인 경호팀의 조직 ·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담은 계획**을 말하며, 경호작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 사전 경호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는 "경호대상자의 신상파악 → 현지답사(경호의 제반여건 즉 행사내용, 취약점, 진 · 출입로, 돌발 상황시 대피로 등 파악) → 경호법규숙지 → 경호계획수립"순서로 진행된다.
경호정보작용은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기본정보, 기획정보, 분석정보, 판단정보, 예고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한다.

▶ p.546에 있는 **23번 문제**의 **해설** 중 **정리박스** 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정리

(지면상 수정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교재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의의	(1)~(3)는 그대로 유지 (4) 경호정보작용은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기본정보, 기획정보, 분석정보, 판단정보, 예고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함.